

다양성으로 균형 잡힌 대법원이 되어야

내년 6월에 4명의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전원이 교체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임기 전반부에는 관료화된 법원조직의 개혁과 인권과 정의수호에 남다른 면모를 보여준 인물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에 맞추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법관 인선이 진행되어 왔다. 기수와 서열, 남성 중심의 임명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 후반기에는 대법관 임명에서 종래의 기수 및 서열, 재판실무능력이 뛰어나지만 출신대학과 성향이 비슷한 현직 고위법관, 그리고 남성 중심의 경직된 인선기준으로 후퇴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현 정부 들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단일화와 보수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다. 헌법이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사법부에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담회에서 대법관 인선에서 다양성과 능력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법령의 통일된 해석을 논

하 태 훈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하는 게 본래 기능에 맞다. 외형적으로 다양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학교, 특정지역 일색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대법원에 연간 3만 6천여 건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도의 법률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칙론과 현실론 중 후자에 방점을 둔 발언이다. 상고사건이 폭주하는 현실에서는 사건처리가 우선이므로 당장은 현실론이 맞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제15대 대법원장 임기 중 거의 대부분 대법관이 바뀐다. 대법원 기능에 대한 대법원장의 소신이 상고허가제 도입으로 실현된다면 대법원 사건 수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면 대법원은 하급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능보다는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으로 무장된 엘리트법관으로 대법관을 충원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 지금부터 그래야 한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었고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전임 대법원장 재임기간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해 보면 의견이 일치된 판결보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나눈 판결이 많고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내에서도 다양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개진된 판결이 많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고

각 부의 토론도 충실해진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이나 노동관련 사건 등 이념성향이 드러나는 사건의 판결에서 더욱 그러했다.

신임 대법원장의 대법원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다양성이 충진될 것인지 취임 후 첫 대법관제청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다행히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2명의 대법관 후보, 그 중에 여성이자 비서울대 출신의 인물이 추천되어 국회동의와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약하다. 그 부족한 정당성을 충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이 반영되도록 직업적 배경,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있어 다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이 사법부를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에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개선요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고,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의 가장 큰 바람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다. 사회적 갈등과 그 해소를 위한 사법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에서 분쟁의 해결 역할을 맡은 사법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관인사문제, 사법의 분권화, 상고제도 등 미완의 사법개혁과 미흡했던 과거사정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임 대법원장의 소망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